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310호

「국토발전전시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훈령 제717호, 2016.6.10.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국토발전전시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훈령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국토발전전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람·대여 등 자료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료관리 조항 신설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“출납” 범위 명확화(안 제2조)

나. 소장경위 등 구입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위한 구입방법의 명시(안 제4조)

다. 자료이관 분야 중 타 부처로 이관된 “항만, 수자원” 삭제 반영(안 제15조 제2항)

라. 전산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자료관리관의 관리업무 절차 의무

화 신설(안 제18조~제20조)

마. 자료관리관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준용 조항 신설(안 제22조)

바. 소장자료 이동 시 대장 관리, 상태 점검 등 기록 의무화 신설(안 제23조 제3항~제6항)

사. 수장고 출입 시 일지 기록 서식 추가 등 관리책임 구체화(안 제24조 제4항)

아. 현행 규정 미비로 타 박물관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는 자료의 대여·수탁·열람·복제 자체 규정 신설(안 제4장)

자.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자료수집 선정위원회의 기능에 손상자료의 처리 및 자료폐기 심의 기능 추가(안 제42조 제5호~제6호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국토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나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
(전화 044-201-4952, 3651, 팩스 : 044-201-5506)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
「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」란을 참고하시거나, 국토교통부
국토정책과(044-201-4952, 365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